

## 보도자료

2010년 5월 12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광혁과장(1650) 나. 전파정책기획과 전성배과장(2210)  
[보고안건]  
가. 방송채널정책과 김영관과장(2470)

# 2010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 [의결안건]

#### 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첨부1 참조)

-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이사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10.3.24)함에 따라 김재우씨(金在祐, 만65세)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임명하기로 의결함.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12. 8. 8.까지임

※ 보궐이사 약력 : 첨부1

#### 나.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 전파법개정('09.2.6, 진성호의원 발의)에 따른 후속조치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 추후 재보고하기로 함

[첨부1]

##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약력



○ 성 명 : 김 재 우 (金在祐)

○ 생년월일 : 1944. 2. 24. (만 65 세)

○ 출생지 : 경남 마산

○ 학 력

'62년 경북사대부고 졸

'67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

○ 주요경력

'10년 ~ 현재 한국코치협회 회장

'09년 ~ 현재 김재우기업혁신연구소장

'06년 ~ '08년 아주그룹 전자재사업부문 부회장

'98년 ~ '05년 (주)벽산 부회장

'97년 (주) 벽산건설 대표이사 사장 좌관 겸 송무기획단장

'89년 ~ '96년 삼성항공 KFP산업본부장(부사장)

'84년 삼성중공업 건설중장비사업본부장(전무)

'81년 이라크 관민통상사절단장

'67년 ~ '81년 삼성물산 특수사업본부장(상무)

##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가.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

-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을 연장(5년 이내 → 7년 이내)한 전파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과 같이 허가심사결과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개정 방송법 시행령('10.1.26) 제16조제2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되, 시청자 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등을 위해 필요시 허가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나. 공공복리용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 (1) 터널, 도시철도(지하), 건축물의 지하층에 개설하는 무선국 중 위성방송보조국에 대해서만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위성방송보조국에 대해서도 전파사용료를 면제
  - ※ 지하구간에 설치된 위성방송보조국 : 392국, 연간 약 2.3억원 감면
- (2)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위성을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하는 지구국의 경우 월 이용요금 수준에 비해 전파사용료가 과도하므로 부담경감을 위해 전파사용료를 면제
  - ※ '07년~'08년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는 위성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요금 월 3만원, 분기별 전파사용료 2만원)
  - ※ 면제대상 지구국은 현재 총 892국으로 면제금액은 연간 7,100만원임
- (3) 소형 어선이 조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156MHz대역의 무선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
  - ※ 현재 2MHz 및 27MHz대역 무선국을 사용하는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으며, 면제규모는 연간 약 4,800만원(분기당 전파사용료 3,000원×4×4,000국)

다. 아마추어무선 이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자격제도 등 개선

- 일반인들도 기초 교육 이수만으로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신설하고,
- 외국 아마추어무선국과 교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국의 출력을 상향조정(500W이하 → 1kW이하)

라.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화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액이 해당 무선국 운용 제한처분이나 무선국 운용정지처분 수준과 비례되도록 기준을 정비

〈 과징금 정비 기준 〉

운용정지/제한 기간	전기통신사업용 무선국 또는 방송국		기타의 무선국	
	운용정지	운용제한	운용정지	운용제한
1개월	5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2개월	1,0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00만원
3개월	1,500만원	750만원	600만원	300만원
6개월	3,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600만원

마. 기 타

- (1) 전파법 개정('09.3.13, 구본철 의원 발의)으로 '전파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 (2) 이용요금연체로 휴대폰 등 무선국 이용이 정지된 자에 대해서는 전파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 정비 등. 끝.